##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88

발의연월일: 2020. 10. 13.

발 의 자:윤재갑·위성곤·김윤덕

강병원 · 박상혁 · 조경태

이상직 · 문진석 · 김민철

신정훈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,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㎡에서 1000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 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・②	제18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
	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
	해서는 300제곱미터에서 1천제
	곱미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
	<u>정한다.</u>